

북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황준호*

국제 외교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반발해 온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나라별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에 비교적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세 차례 열린 UPR에서 109개국으로부터 총 702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337개를 수용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UPR은 인권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 읽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에 인권개선 권고를 제기한 각 나라와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권고 수용률 사이의 관계를 UPR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친밀도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수교 상태, 대사관 설치, 정부대표단 방문 등 4개 요소로 산출했다. 나라별 권고의 수용률은 총권고에서 최종 수용한 권고의 비율이다.

분석 결과 북한은 외교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인권 권고 수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북한 인권, 보편적정례검토, UPR, 외교적 친밀도, 북한 외교, 유엔 인권이사회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UPR과 북한의 참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인권 의무와 약속에 관한 자신들의 이행 상황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다. 검토의 준거가 되는 것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검토 대상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인권보호조약, 각 국가가 제안한 자발적인 공약(pledges)이나 인권준수 의지(commitments) 등이다.¹⁾

2006년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가 관장하는 UPR은 2008년 시작 당시에는 1년에 세 번 회의를 열고, 각 회의당 2주 동안 16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전체 검토 기간이 4년 반으로 연장되었고, 그 기간 동안 총 14차례의 회의를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각 회의마다 검토하는 국가 수는 14개로 줄었고, 나라별 배당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늘었다. 유엔 차원에서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회의가 4년 반에 한 번씩 3시간 반 동안 열리는 것인데, 그에 앞서 대상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이해당사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보고서가 작성된다.

UPR은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의해 진행된다.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 모여 사전에 마련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사 대상 국가를 두고 3시간 반 동안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라는 이름의 검토회의를 주도한다. 여기에는 47개 이사국 외에 유엔 회원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참

1) 우종길,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새로운 국제인권보호제도인 보편적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 15권 1호(2008), 348쪽.

여해 발언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비(非)이사국들이 참여하는 상호대화는 UPR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심사·검토 대상국에 질문과 권고(recommendations)를 하고 답변을 받는다.²⁾ 상호대화가 끝나면 실무그룹은 48시간이 지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서로 다른 3개 지역그룹에서 선출된 이른바 ‘트로이카’ 3개국에 의해 작성된 후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³⁾

이런 절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주기(cycle)’라 부른다. 1주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주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다. 2017년 시작된 3주기는 2021년에 끝날 예정이다. 각국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어 자국 차례가 오면 지난 주기 상호대화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되어 수용하겠다고 했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등을 보고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권고를 받기도 한다.

1주기 UPR에서 북한에 대한 상호대화는 제6차 실무그룹 회기 중이었던 2009년 12월 7일 52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46개국이 167개의 권고를 제기했다. 북한대표부(리철 주 제네바 대사)는 그 권고 가운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노동수용소의 강제노역 중단,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중단, 주민들의 국내·국외 자유 보장, 아동 군사훈련 중단 등 50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2) 서창록·김윤의, “유엔헌장 기반 인권보호체제와 동아시아 인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2014), 165쪽;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 제6권 1호(2013), 149쪽.

3)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제도와 북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엮음,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서울: 통일연구원, 2013), 18~24쪽.

거부 의사를 표했다.⁴⁾ 이와 같은 논의 상황을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초안은 이틀 뒤인 12월 9일 채택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10년 3월 18일 인권이사회가 심의하고 권고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167개 권고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표시되어 있다. 수용한 권고는 87개(부분 수용 6개 포함)였고, 응답을 보류[2주기부터는 “주목(note)”으로 표현한 권고는 15개였으며, 거부한 것은 65개(상호대화 당시 즉각 거부한 50개 포함)였다.⁵⁾

2주기 UPR에서 북한에 대한 상호대화는 2014년 5월 1일 실시되었고, 최종보고서는 9월 19일 채택되었다. 2주기에는 82개국에 총 269개의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17개를 수용(부분 수용 4개 포함)하고, 59개를 주목했으며, 93개를 거부(즉각 거부 83개 포함)했다. 3주기 UPR에서 북한에 대한 상호대화는 2019년 5월 9일 실시되었고, 최종보고서는 9월 19일 채택되었다. 3주기에는 87개국에서 266개의 권고가 나왔는데, 북한은 133개를 수용했고, 59개를 주목했으며, 74개를 거부(즉각 거부 63개 포함)했다.⁶⁾

4) 위의 글, 30쪽.

5)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 현황은 UPR-info(www.upr-info.org)의 데이터 참조.

6) 본 논문의 3주기 수치는 다른 논문에 소개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동일한 권고가 복수의 국가에서 나온 경우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각각을 별개의 권고로 집계했다. 다른 논문들처럼 하나의 권고로 집계하면 총권고 262건, 수용 132건, 주목 56건, 거부 74건이 된다. 즉, 총권고 수에서 4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3건의 권고를 7개국이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경우 7건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다른 논문보다 4건이 많다.

<표 1> UPR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반응 종합

	총권고	수용	주목	거부
1주기(2009)	167	87	15	65
2주기(2014)	269	117	59	93
3주기(2019)	266	133	59	74
합계	702	337	133	232

그간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그 결의안에 기초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강력히 반발해 왔다.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랬던 북한이 UPR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UPR 주기별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도 예상보다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 과거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던 각종 인권 관련 활동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치화나 선별성, 이중잣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UPR이 기획되었다는 취지를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인권을 논하는 자리를

7) 국가보고서는 영문으로 20쪽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분량은 1주기 20쪽, 2주기 18쪽, 3주기 15쪽이었다. 구성은 주기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작성 준비 과정,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조치, 인권 보호·증진의 성과, 도전과제와 향후 목표 등으로 작성되었다. 1주기 보고서의 경우 UPR의 목적과 원칙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며 인권에 관한 자신들만의 기본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2장)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8) 김원식,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79(2020), 1쪽.

마냥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북한이 비교적 적극적이다 보니 UPR은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 읽거나 행동의 패턴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UPR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권고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이 수용하는 권고는 무엇이며 거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해 보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김원식은 북한이 내부 법제 개선과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개선 등과 관련해 건설적으로 반응해 온 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과 협력 거부를 지속해 왔다고 분석했다.⁹⁾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수경은 3차 UPR에 관한 글에서 북한이 자유권보다 사회권 관련 사안에 대해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여 왔다면서, 북한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3차 UPR 당일 회의 발언을 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인권개선에 힘쓴 분야는 주로 사회권과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 관한 것이었고, 반면 자유권 증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개선이 없었다고 분석했다.¹⁰⁾

9) 위의 글, 12쪽.

10)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방안,” 『통일연구원 현안분석: 온라인시리즈』, CO, 19-01(2019), 6~7쪽.

이처럼 권고의 내용에 따른 북한의 선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내용 외에 북한의 권고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그 요인은 바로 권고를 제기하는 나라들과 북한 사이의 관계다. 북한이 권고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데에 있어 권고를 제기한 나라와 북한의 관계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친하지 않은 나라가 제기한 인권 권고를 북한이 더 잘 수용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북한은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제기하는 권고를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와 UPR 권고 수용률 계산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독립변수는 양자 관계의 수준인데, 이를 ‘외교적 친밀도’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외교적 친밀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의 합으로 산출한다.

첫째 요소는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 때부터 매년 상정되어 2020년 제75차 총회까지 총 16차례 상정되었다. 그 가운데 일곱 번은 투표율 하지 않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가 채택되었고, 아홉 번은 표결을 실시해 과반의 득표를 얻어 채택됐다. 이 아홉 차례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나라들은 북한과 외교적인 친밀도가 높다고 간주해 2점을 부여하고, 기권하거나 불참한 나라에는 1점, 반대한 나라에는 0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각 표결에 따라 나라별 점수를 준 후 9회 전체의 평균을 구해 첫째 요소의 점수를 최종 결정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사국 자격이 있는 40~50개국만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 대상 UPR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이사국이 아니었던 나라들의 입장은 알 수 없다. 투표권이 없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불참이나 기권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따라서 UPR 전체 참여국의 입장을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¹¹⁾

외교적 친밀도의 두 번째 요소는 북한과의 수교 상태다. 일반적으로 수교 상태는 수교/미수교/잠정상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현재 북한과 수교한 나라는 161개국으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수교 여부만으로는 뚜렷한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우리 편 만들기’에 오랜 세월 외교적 에너지를 쏟아 왔다는 사실에 착안해 남한과의 수교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¹²⁾ 즉, 남한과는 수교하지 않은 채 북한하고만 단독으로 수교한 나라에는 최고점인 2점을 주고, 남북한 동시 수교한 나라에는 1점, 남한과만 단독으로 수교한 나라들에는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¹³⁾

외교적 친밀도의 세 번째 요소는 대사관 설치 여부다. 북한과 상대국이 대사관을 교환 설치했으면 2점, 한쪽 나라에만 설치했으면 1점,

11)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별 투표 현황을 따랐다. http://www.mofa.go.kr/www/wpge/m_3995/contents.do(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12)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162~163쪽.

13) 외교부가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외교관계 수립 현황을 따랐다. http://www.mofa.go.kr/www/wpge/m_4181/contents.do(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표 2>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요소별 배점(총점 8점)

요소	2점	1점	0점	비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1요소)	반대	기권·불참	찬성	9회 평균치
수교 상태(2요소)	북 단독수교	남북 동시수교	남 단독수교	
대사관 설치(3요소)	상호 교환 설치	한쪽에만 설치	미설치	
대표단 방문(4요소)	2회 이상	1회	0회	

어느 한쪽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0점을 부여했다.¹⁴⁾ 네 번째 요소는 정부 대표단의 방문 횟수다. 북한에 대한 UPR이 열린 3개 연도에 북한의 대표단이 상대국을 방문했거나 상대국이 북한을 방문한 횟수를 세어 어느 한쪽으로도 2회 이상 방문이 있던 나라에 2점, 1회 방문에 1점, 0회에 0점을 부여한다. 북한이 파견한 대표단은 그 명목이 조선노동당이건 내각이건 최고인민회의의건 모두 국가 차원의 대표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방문한 나라의 정부 인사를 만난 경우라면 모두 포함했다. 다만, 방문한 나라의 정부 인사는 만나지 않은 채 그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만 참석한 경우는 제외했다. 반대로 외국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경우는 정부 차원의 방문에 한해서만 집계했다.¹⁵⁾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소 각각의 최고점은 2점으로, 외교적

14) 북한의 타국 주재 대사관 설치의 외교부 홈페이지의 재외공관 설치 현황을 따랐다. http://www.mofa.go.kr/www/wpge/m_4178/contents.do(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북한 주재 외국 공관 현황은 국가통계포털에 게재된 남북한 주재 외국 공관 현황을 따랐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A16(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15) 북한 대표단의 해외 방문과 해외 대표단의 북한 방문은 『조선중앙년감』에 매년 종합적으로 발표된다. 본 연구는 2009년과 2014년, 2018년 『조선중앙년감』에 나온 사례를 집계했다. 북한에 대한 3주기 UPR은 2019년에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는 『조선중앙년감』 2018년 발간본까지만 들어와 있어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친밀도의 총점은 8점이 된다.

외교적 친밀도는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하고는 ‘외교’를 이루는 기초적인 요소만으로 계산하는 셈인데, 이는 북한의 대외관계상 특징에서 비롯된 조작화이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실질적인 의미의 외교를 하는 대상국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친밀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외교 행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고려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나라들의 대외 관계라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 관계도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액의 90% 이상¹⁶⁾을 차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관계를 외교적 친밀도의 요소로 넣는 것은 UPR 참여 국가별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고 적실성도 떨어진다.

한편,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종속변수는 UPR 권고에 대한 북한의 수용 비율이다. 이는 특정 국가가 제기한 권고 수의 총합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권고가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해 얻을 수 있다.

$$\text{권고 수용률} = \frac{\text{수용한 권고수}}{\text{전체 권고수}} \times 100$$

없었다. 『조선중앙년감 200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9), 257~266쪽; 『조선중앙년감 201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4), 428~440쪽; 『조선중앙년감 201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8), 301~310쪽.

16)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0.2%, 2015년 91.3%, 2016년 92.7%, 2017년 94.8%, 2018년 95.8%, 2019년 95.4%를 기록했다. 2019년 교역 비중 2위인 러시아는 1.48%에 불과했고, 3위 이하 국가들은 모두 1% 미만이다. 김일경, “2019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TRA자료』, 20-187(2020), 12~15쪽.

<표 3>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UPR 권고 수용률 계산 결과

	1요소	2요소	3요소	4요소	친밀도 (1+2+3+4요소)	수용	총권고	수용률
쿠바	2.00	2	2	2	8.00	9	9	100%
이란	2.00	1	2	2	7.00	10	10	100%
시리아	2.00	2	2	1	7.00	7	7	100%
러시아	2.00	1	2	2	7.00	3	6	50%
중국	2.00	1	2	2	7.00	5	5	100%
라오스	1.44	1	2	2	6.44	4	4	100%
베트남	2.00	1	2	1	6.00	9	9	100%
인도네시아	1.56	1	2	1	5.56	6	7	86%
민주콩고	1.11	1	1	2	5.11	2	2	100%
베네수엘라	2.00	1	2	0	5.00	6	6	100%
이집트	2.00	1	2	0	5.00	6	7	86%
우간다	1.00	1	1	2	5.00	2	2	100%
미얀마	1.78	1	1	1	4.78	5	5	100%
말레이시아	1.56	1	2	0	4.56	6	7	86%
브라질	0.22	1	2	1	4.22	2	9	22%
파키스탄	1.11	1	2	0	4.11	9	9	100%
나미비아	1.11	1	0	2	4.11	4	7	57%
벨라루스	2.00	1	1	0	4.00	8	8	100%
나이지리아	1.00	1	2	0	4.00	4	5	80%
싱가포르	1.00	1	1	1	4.00	3	3	100%
멕시코	0.00	1	1	2	4.00	2	9	22%
스웨덴	0.00	1	2	1	4.00	3	12	25%
인도	1.00	1	2	0	4.00	2	4	50%
앙골라	1.00	1	1	1	4.00	2	2	100%
캄보디아	0.89	1	2	0	3.89	2	2	100%
알제리	1.78	1	1	0	3.78	8	8	100%
니카라과	0.78	1	0	2	3.78	4	4	100%
리비아	1.56	1	1	0	3.56	3	3	100%
불가리아	0.00	1	2	0	3.00	4	4	100%

	1요소	2요소	3요소	4요소	친밀도 (1+2+3+4요소)	수용	총권고	수용률
쿠웨이트	1.00	1	1	0	3.00	2	2	100%
짐바브웨	2.00	1	0	0	3.00	4	4	100%
에티오피아	1.00	1	1	0	3.00	5	5	100%
네팔	1.00	1	1	0	3.00	2	2	100%
폴란드	0.00	1	2	0	3.00	5	11	45%
세네갈	1.00	1	1	0	3.00	0	3	0%
영국	0.00	1	2	0	3.00	1	10	10%
체코	0.00	1	2	0	3.00	0	12	0%
모잠비크	1.00	1	0	1	3.00	1	2	50%
독일	0.00	1	2	0	3.00	2	13	15%
수단	2.00	1	0	0	3.00	2	2	100%
루마니아	0.00	1	2	0	3.00	0	1	0%
우즈베키스탄	1.89	1	0	0	2.89	1	1	100%
오만	1.78	1	0	0	2.78	2	2	100%
방글라데시	0.78	1	1	0	2.78	4	4	100%
태국	0.67	1	1	0	2.67	5	6	83%
필리핀	0.44	1	0	1	2.44	9	9	100%
투르크메니스탄	1.11	1	0	0	2.11	5	5	100%
이탈리아	0.00	1	1	0	2.00	2	12	17%
스위스	0.00	1	1	0	2.00	3	10	30%
오스트리아	0.00	1	1	0	2.00	2	14	14%
스페인	0.00	1	1	0	2.00	1	17	6%
스리랑카	1.00	1	0	0	2.00	5	6	83%
예멘	1.00	1	0	0	2.00	1	1	100%
카자흐스탄	0.00	1	0	1	2.00	3	3	100%
차드	0.78	1	0	0	1.78	1	1	100%
코트디부아르	0.67	1	0	0	1.67	2	2	100%
튀니지	0.67	1	0	0	1.67	2	5	40%
남수단	0.67	1	0	0	1.67	3	3	100%
토고	0.44	1	0	0	1.44	1	3	33%

	1요소	2요소	3요소	4요소	친밀도 (1+2+3+4요소)	수용	총권고	수용률
시에라리온	0.44	1	0	0	1.44	1	4	25%
세르비아	0.33	1	0	0	1.33	2	2	100%
부룬디	0.33	1	0	0	1.33	2	3	67%
피지	0.22	1	0	0	1.22	3	3	100%
볼리비아	1.11	0	0	0	1.11	5	5	100%
가나	0.11	1	0	0	1.11	1	3	33%
몬테네그로	0.00	1	0	0	1.00	1	3	33%
몰디브	0.00	1	0	0	1.00	2	2	100%
아일랜드	0.00	1	0	0	1.00	2	6	33%
그리스	0.00	1	0	0	1.00	6	17	35%
아프가니스탄	0.00	1	0	0	1.00	2	3	67%
노르웨이	0.00	1	0	0	1.00	11	16	69%
네덜란드	0.00	1	0	0	1.00	2	8	25%
핀란드	0.00	1	0	0	1.00	1	3	33%
조지아	0.00	1	0	0	1.00	1	3	33%
크로아티아	0.00	1	0	0	1.00	1	3	33%
우크라이나	0.00	1	0	0	1.00	3	8	38%
칠레	0.00	1	0	0	1.00	6	17	35%
룩셈부르크	0.00	1	0	0	1.00	1	4	25%
벨기에	0.00	1	0	0	1.00	1	11	9%
포르투갈	0.00	1	0	0	1.00	1	7	14%
호주	0.00	1	0	0	1.00	1	9	11%
라트비아	0.00	1	0	0	1.00	1	8	13%
프랑스	0.00	0	0	1	1.00	3	17	18%
동티모르	0.00	1	0	0	1.00	3	6	50%
아이슬란드	0.00	1	0	0	1.00	0	6	0%
뉴질랜드	0.00	1	0	0	1.00	3	12	25%
덴마크	0.00	1	0	0	1.00	0	4	0%
캐나다	0.00	1	0	0	1.00	4	17	24%
슬로베니아	0.00	1	0	0	1.00	6	14	43%

	1요소	2요소	3요소	4요소	친밀도 (1+2+3+4요소)	수용	총권고	수용률
헝가리	0.00	1	0	0	1.00	3	8	38%
터키	0.00	1	0	0	1.00	0	5	0%
리투아니아	0.00	1	0	0	1.00	2	8	25%
마케도니아	0.00	1	0	0	1.00	1	5	20%
슬로바키아	0.00	1	0	0	1.00	0	4	0%
에콰도르	0.89	0	0	0	0.89	2	4	50%
아이티	0.44	0	0	0	0.44	1	2	50%
보츠와나	0.33	0	0	0	0.33	1	4	25%
대한민국	0.22	0	0	0	0.22	6	11	55%
코스타리카	0.11	0	0	0	0.11	3	8	38%
부탄	0.00	0	0	0	0.00	2	2	100%
온두라스	0.00	0	0	0	0.00	2	3	67%
이라크	0.00	0	0	0	0.00	2	3	67%
에스토니아	0.00	0	0	0	0.00	2	7	29%
우루과이	0.00	0	0	0	0.00	3	9	33%
아르헨티나	0.00	0	0	0	0.00	3	8	38%
이스라엘	0.00	0	0	0	0.00	5	16	31%
미국	0.00	0	0	0	0.00	2	13	15%
일본	0.00	0	0	0	0.00	3	9	33%

주: 친밀도 내림차순 정렬.

‘UPR-info’ 사이트(www.upr-info.org)의 데이터¹⁷⁾를 활용해 북한 대상

17) UPR 권고에 대한 북한의 반응(수용/주목/거부)은 1주기 보고서(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06_-_november_2009/recommendations_to_dprk_2009.pdf)와 2주기 보고서(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19_-_april_2014/recommendations_and_pledges_dprk_2014.pdf), 3주기 보고서(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33_-_may_2019/2rps_dprk.pdf)에 정리되어 있다(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세 번의 UPR을 한 번 한 것으로 간주해 통합 집계해 보니 1회 이상 권고를 내놓은 나라는 109개국이었다. 본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표결권이 없는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108개국을 가설 검증의 대상으로 한다.¹⁸⁾ 108국에 대한 친밀도와 수용률은 <표 3>과 같이 계산되었다.

4. 결과 분석

이 결과를 가지고 친밀도를 2점 간격의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수용률 평균을 구하면 <표 4>와 같다. 친밀도가 높을수록 수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 단순한 통계다.

<표 4> 친밀도 구간별 수용률 평균

외교적 친밀도		권고 수용률 평균
1구간(54개국)	0~1,99	42%
2구간(30개국)	2~3,99	68%
3구간(17개국)	4~5,99	77%
4구간(7개국)	6~8	93%

본 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외교적 친밀도가 UPR 권고 수용률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수립했다.

18) 팔레스타인은 북한에 총 4차례의 권고를 했고, 북한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수용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위는 유엔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단체’(entity) 또는 ‘옵서버 국가’(state)여서 북한인권결의안에 투표하지 못해 친밀도를 산출할 수 없다.

$$\text{모형: } V = \alpha + \beta * \text{친밀도} + \epsilon$$

앞서 언급했듯 친밀도는 네 가지 요소의 합으로 구성된다. 제1요소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로, 반대했으면 2점, 기권이나 불참했으면 1점, 찬성했으면 0점을 주었다. 제2요소는 수교 상태로, 북한 단독수교 2점, 남북한 동시수교 1점, 남한 단독수교 0점이다. 제3요소는 대사관 설치로, 상호 교환했으면 2점, 한쪽에만 설치했으면 1점, 미설치는 0점이다. 제4요소는 정부 대표단 방문 횟수로, 2회 이상 2점, 1회 1점, 0회 0점이다.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범주(최솟값, 최댓값)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자료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분포의 비대칭 정도)와 첨도(Kurtosis: 도수 곡선의 뽕족함 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아 자료가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외교적 친밀도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8.0으로 평균은 2.40, 표준편차는 1.87로 나타났다. UPR 권고 수용률(%)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0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8, 표준편차는 37로 산출되었다. 친밀도와 수용률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49($p < 0.001$)로 두 변인의 선형관계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친밀도가 수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에서 제시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교적 친밀도는 UPR 권고 수용률

19) Stephen G. West, John F. Finch & Patrick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ick H. Hoyle(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1995), pp.56~75.

<표 5> 연구변인 기술통계

(N=108)

구성요소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친밀도	0	8.0	2.4	1.87	0.95	0.37
수용률	0	100	58	37	-0.06	-1.58

<표 6> 외교적 친밀도가 UPR 권고 수용률에 미치는 영향

(N=108)

	<i>B</i>	<i>SE</i>	β	<i>t</i>	<i>p</i>
상수	.93	.29		3.15	<i>p</i> = .002
친밀도	2.47	.43	.49	5.78	<i>p</i> < .001

자료: $R^2 = .239$, $F(1, 106) = 33.367(p < .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친밀도가 높을수록($B=2.47$) 수용률이 높아지며, 친밀도가 수용률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3.9%이다.

요컨대, 외교적 친밀도와 UPR 권고 수용률은 피어슨 상관계수 0.49로 양(+)²⁰⁾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친밀도가 높을수록 수용률은 커지는데, 23.9%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는 세 번의 UPR을 통합 집계한 결과인데, 주기별로 따로 분석해 보면 그 설명력은 더 커진다.²⁰⁾ 45개국이 권고에 참여한 1주기 UPR의 경우 피어슨 상관계수는 0.601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설명력(결정계수)은 36.2%이다. 82개국이 권고에 참여한 2주기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20) 주기별 분석에서도 외교적 친밀도는 1~3주기 통합 분석 시 산출된 <표 3>의 친밀도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주기별 검토회의가 열린 연도만을 뽑아 친밀도를 계산할 경우 크게 '튀는' 수치가 나와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친밀도'라는 개념이 10년 만에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다.

0.521이고, 설명력(결정계수)은 27.1%이다. 86개국 이 권고에 참여한 3주기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497이고, 설명력(결정계수)은 24.7%로 나타났다.²¹⁾²²⁾

따라서 통계적으로 두 변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친밀도가 곧 수용률의 원인이라고 결정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외교적 친밀도가 높으면 수용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²³⁾ 이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제기한 권고를 더 많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검증되었다.

5. 결론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무렵부터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을 본격 추진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였

21) 주기가 거듭될수록 설명력(결정계수)이 1주기 36.2%, 2주기 27.1%, 3주기 24.7%로 점차 떨어지는 경향도 확인된다. 친밀도와 수용률의 관계가 점차 약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3회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이르다.

22)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심리학 연구자인 신용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23) 데이비드 스피겔할터(David Spiegelhalter),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권혜승·김영훈 옮김(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20), 116쪽; 쿠메 이쿠오(久米郁男), 『원인을 추론하다』, 하정봉 옮김(서울: 논형, 2017), 117~121쪽.

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정부가 남북대화를 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뜨거워졌다.

당시 보수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노라 공언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대화 테이블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벌어진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 비교적 활발히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남북 양자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논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현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남북대화를 추구하자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정부가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하면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괴리(乖離)에서 논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06년 5월 3일 한 토론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에 왜 인권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정도가 되고, 또 내 말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마저도 안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측에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²⁴⁾ 관계가 진전

되고 깊어지면 비로소 인권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필자는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 사이나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랜 기간 적대적이었던 사이가 겨우 좋아지려고 하는 예민한 시점에 상대가 싫어하는 문제를 꺼낸다면 관계는 다시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쓴소리’를 해도 관계 자체는 깨지지 않을 만큼 탄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제기해야 한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당위만을 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꺼냈다가는 그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맞는지를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입증해 보고자 했다. “관계가 진전되면 북측에 (인권 문제를 비롯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북한과의 관계 수준(친밀도)과 인권 문제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자료를 과거에는 찾기 힘들었으나, 2008년 시작된 UPR에 북한이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세 차례의 UPR을 통해 축적되었다.

북한이 UPR 권고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나라별 비율을 계산하고, 그 나라들과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점수를 구한 뒤 둘 사이의 관계를

24) “북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권문제 잘 알고 관심 있어”-이종석 장관,” 자유아시아 방송, 2006년 5월 4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외교적으로 친한 나라가 제기한 권고를 더 많이 수용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로써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어야 비로소 인권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과 친한 나라들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한다면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편해할 얘기를 다른 나라의 입을 빌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외교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시도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친해지기만 하면 수용률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UPR 인권 권고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북한의 선택에서 외교적 친밀도가 ‘하나의’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다른 변수들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면 북한의 선택에 대한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그 ‘다른 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의 내용이다. 권고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유권보다 사회권과 관련된 권고에 더 열린 태도를 취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권고의 ‘난이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과 친한 나라들은 비교적 쉬운 권고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추가 분석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친한 나라들이 제기하는 권고를 더 잘 수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론과, 북한과 친한 나라들은 애초에 쉬운 권고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 가운데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 시도한 양적 연구의 방법으로 권고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는 권고라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가 되는 ‘상대성’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무니없이 쉬운 권고나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권고 등을 제외한다면 친밀도와 수용률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설명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화’(국내정치쟁점화)의 정도가 매우 높은 이슈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두고 편을 갈라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북한 인권’이 국내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소재가 된 것이다. 박명림은 남한의 진보와 보수에게 진정한 초점은 북한 인권의 개선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국내정치이며, 민주화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보수-진보 남남 갈등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다.²⁵⁾

이런 환경이다 보니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의 실효적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연구자나 시민단체 등이 설 곳은 협소하다.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매도 되거나 이용되기 십상이다. 선의와 정당성, 당위성만을 내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애초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기도 힘들뿐더러 나이브하다는 소리밖에 들을 게 없을 것이다. 자칫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인권 정치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이 연구 역시 그런 협소한 토대 위에 서 있다.

■ 접수: 1월 28일 / 수정: 4월 2일 / 채택: 4월 6일

25) 박명림,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2호(2016), 49~50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선중앙년감 200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9).

『조선중앙년감 201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4).

『조선중앙년감 201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8).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데이비드 스피겔할터(David Spieghalter),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권혜승·김영훈 옮김(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20).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쿠메 이쿠오(久米郁男), 『원인을 추론하다』, 하정봉 옮김(서울: 논형, 2017).

2) 논문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방안,” 『통일연구원 현안분석: 온라인시리즈』, CO 19-09(2019), 1~7쪽.

김원식,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79(2020), 1~17쪽.

김일경, “2019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TRA자료』, 20-187(2020), 1~38쪽.

박명림,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다문 화사회연구』, 제9권 2호(2016), 39~68쪽.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제도와 북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엮음,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서울: 통일연구원, 2013), 7~53쪽.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 제6권 1호(2013), 145~175쪽.

서창록·김윤의, “유엔헌장 기반 인권보호체제와 동아시아 인권: 보편적 정례인 권검토(UPR)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2014), 159~193쪽.

우종길,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새로운 국제인권보호제도인 보편적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2008), 345~364쪽.

3) 기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umanrights.go.kr.

국가통계포털, kosis.kr.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북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권문제 잘 알고 관심 있어’ - 이종석 장관,” 자유아시아 방송, 2006년 5월 4일.

3. 국외 자료

1) 논문

West, Stephen G., John F. Finch and Patrick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ick H. Hoyle(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1995), pp. 56~75.

2) 기타 자료

UPR-info, www.upr-info.org.

1주기 보고서, 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06_-_november_2009/recommendations_to_dprk_2009.pdf(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2주기 보고서, 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19_-_april_2014/recommendations_and_pledges_dprk_2014.pdf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3주기 보고서, 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33_-_may_2019/2rps_dprk.pdf(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iplomatic Intimacy and Recommendation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wang, Jun H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North Korea refused to have its human rights issues discussed internationally, North Korea has been relatively active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which reviews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UN member states. In three UPRs targeting North Korea, a total of 702 recommendations from 109 countries have been received, 337 recommendations of which have been accepted by North Korea. As North Korea actively participates in UPR, a variety of data has emerged that can help one understand North Korea's thoughts on human rights issues and/or analyze patterns of its behavior. Based on this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plomatic closeness of North Korea and the countries that made recommendations for North Kore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and the rate of acceptance of those recommendations. Diplomatic

closeness was calculated as the sum of four factors -- (1) the vote o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2) the situation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3) whether or not an embassy was established, and (4) the number of visits by government delegations -- while the acceptance rate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recommendations finally accepted by North Korea from the total number of recommendations made by a specific coun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diplomatic closeness, the greater the acceptance rate of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This suggests that one's level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get Pyongyang to accept criticism of its human rights.

Keyword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UN Human Rights Council, diplomatic closeness